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03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가. 제안 이유

-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 관련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11,571,543천원

(인건비 510,594, 운영경비 583,913, 사업비 10,438,359, 성과급 38,677)

2) 주요사업

- 공평한 교육의 기회제공·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지원 장학사업 :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지원
 -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및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 인재지원 및 교류 활성화 : 멘토링, 특강,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
 - 홍보사업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

3) 출연의 필요성

-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

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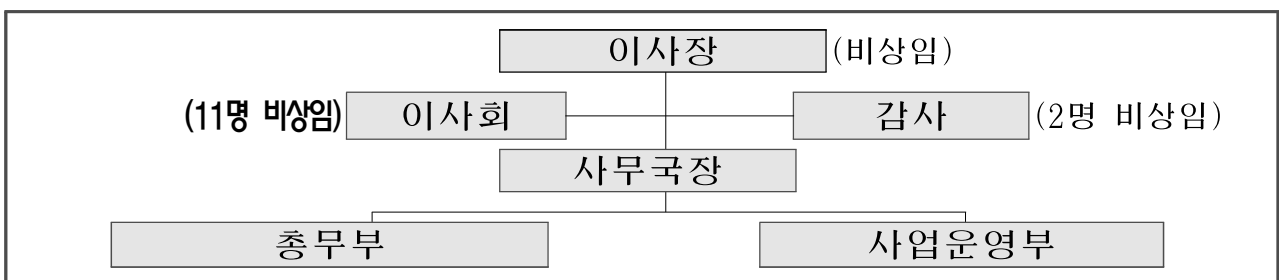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제18조1)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서울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관련 법령(「민법」제32조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출연의 조건은 충족한다고 하겠음.

가. 서울장학재단 현황

- 서울장학재단은 2007년 조례제정 이후 2010년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여 2017년 현재는 이사장-이사회를 비상임으로 두고, 현원 7명(정원 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2개 사업(서울시 출연금 : 6개 사업, 운영소득기탁금 : 6개 사업)에 117억1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음.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2017년 사업예산(117억원, 서울시출연금 97억원) 중 장학사업에 106억원을 편성하고, 2016년 대비 서울시출연 장학 사업은 5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부금·운영소득 장학 사업은 10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서울장학재단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7년 예산	예산과목		2017년 예산
세입	총 계	11,713,022	세출	총 계	11,713,022
	서울시 출연금	9,757,945		운영비	619,006
	기부금수입	268,000		예비비	33,833
	전기이월금	1,421,629		사업비	10,663,063
	이자수익	265,448		차기이월금	397,120

※ 서울장학재단 기본재산 : 136억원

〈 2016·2017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내역 〉

(단위:백만원)

장학사업명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비율
총 계	11,560	10,487	△1,074	△9.3%
서울시 출연금 장학사업	10,154	9,823	△331	△3.3%
서울희망장학금 고등학교분야	5,700	5,001	△699	△12.3%
서울희망장학금 하나고등학교	144	144	0	0.0%
서울희망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	310	310	0	0.0%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3,700	4,002	302	8.2%
서울희망장학금 공익인재분야	300	345	45	15.0%
서울평화희망장학금	-	21	21	100%
운영소득 및 기부금장학사업	1,406	663.5	△742.5	△52.8%
운영소득사업	241	181	△60	△24.9%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181	181	0	0.0%
글로벌인재	60	-	△60	△100%
기부금 장학사업	1,165	482.5	△682.5	△58.6%
청춘스타트장학금(주두산)	107	86	△21	△19.6%
H-JUMP스쿨 장학금(주현대자)	257	254	△3	△1.2%
유영아 학업 장학금(주K.S.E.C)	42	46.5	4.5	10.7%
오토꿈이름서울 장학금 (주오토)	30	33	3	10.0%
청계천꿈디딤 장학금 (서울시설공단)	60	63	3	5.0%
엠플글로벌리더장학금 (주한국엠플)	610	-	△610	△100%
동아출판 꿈나무 (동아출판)	37	-	△37	△100%
푸른꿈 희망 (에코시티서울)	22	-	△22	△100%

출처 : 2016년, 2017년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

나. 서울장학재단 출연의 필요성

- 장학재단은 ‘저소득가장 지원’, ‘공익인재 및 대학생 지원’ 과 ‘민간기탁금을 연계한 장학사업’, ‘인재지원 및 장학생의 사회활동 활성화 사업’ 등으로 장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서울시의 목적과 장학재단의 사업이 일치하고 있어, 서울장학재단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 서울장학재단 출연규모의 적정성

- 서울장학재단의 2018년 출연금(115억7천1백만원)은 전년(97억5천8백만원)대비 18.6%(18억1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비(13억3천만원), 인건비(1억6천만원), 운영경비(3억1천만원)의 증액이 주된 증가사유라고 하겠음.

< 연도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현황 >

(단위: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안)	2017년 대비	
						증감액	증감비율
출연금	110,188	10,128	10,156	9,758	11,571	1,813	18.6%
사업비	9,731	9,651	9,551	9,105	10,438	1,333	14.6%
운영비등	457	477	605	653	1,133	480	73.6%

<2018년 서울장학재단 운영비 등의 증감현황 >

(단위:천원)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증감액	증감비율
인건비	348,306	510,594	162,288	46.6%
운영경비	270,700	583,913	313,213	115.7%
성과급	0	38,677	38,677	100%
예비비	33,833	0	△33,833	△100%

※ 인건비 증액은 사업확대(필수인력확보)와 경영지원 확대(민간 지정기탁 사업 활성화, 장학생 사후관리 등)를 위해 정원을 8명(현원7명)에서 12명(사업부 3명, 총무부2명 증원)으로 증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증액하고 있음.

< 2018년 서울장학재단 인건비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분	2018년 실행예산	산출내역		비고
기존인력	330,835	- 급여(7명)	260,627	서울시 출연금
		- 제수당(7명)	70,208	
신규인력	143,065	- 급여(5급 1명)	23,900	
		- 급여(6급 4명)	86,000	
		- 제수당(5명)	33,165	
초단근로자보수	8,400			
퇴직급여	28,294			
계	510,594			

※ 운영경비 증액은 현 사무국의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 신규인력채용에 따른 사무공간확보 및 장학생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무국 이전을 위해 증액하고 있음.

< 2018년 서울장학재단 운영경비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분	2018년 실행예산	산출내역		비고
임차료·관리비	159,564	임차료·관리비 13,297X12개월	159,564	서울시 출연금
임대보증금	102,150	임대보증금 102,150 X 1식	102,150	
이전비	50,000	인테리어 비용 30,000 X 1식	30,000	
		이사비용 5,000 X 1식	5,000	
		현사무국 원상복구 15,000X1식	15,000	
계	311,714			

< 서울장학재단 신규공간 활용방안(안) >

구분	면적비율	비고	구분	면적비율	비고
사무실	40%	정원 12석, 예비 2석	사무국장실	4%	책상, 책장, 회의테이블
대회의실	30%	대회의실 및 장학생 커뮤니티 공간	창고	7%	
소회의실	6%	장학생 소그룹 활동실(2개)	탕비실	2%	냉장고, 정수기, 수납공간
이사장실	7%	책상, 책장, 회의테이블	문서보관실	4%	

※ 신규 사무국의 규모는 330㎡ 예정, 공식행사는 신용보증재단 지하강당 무료 이용 예정

-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³)과 그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⁴)에 따라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의 출연금의 100의 110이상’인 경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타당성을 미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 바,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연도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현황 >

(단위:백만원)

	2017년	2018년 (안)	2017년 대비 증감비율
출연금	9,758	11,571	118.6%
사업비	9,105	10,438	114.6%
운영비등	653	1,133	173.6%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서울시의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 업무보고 시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금, 국가 등(타기관, 타지자체, 민간, 학교 등)의 장학금 확대에 따른 장학금 중복, 서울시 출연금의 과도한 의존, 민간기탁금 유치 미흡 등을 지적하며, 사회·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재단운영과 장학사업의 방향 재정립 등을 장학재단에 요구한 바 있었으며,

장학재단은 연구시행, 세미나⁵⁾ 개최 등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활동은 하고 있으나, 연구 및 세미나 결과와 시의회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 바,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및 출연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장학재단의 개선안 마련 여부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발전방안 연구’ 추진 경과 〉

- 사업 개선 필요성
 - 장학사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 확산
 - 서울 학령인구 감소(151만명(2015년)→115만명(2030년))
 - 정부의 공교육비 지원강화 → 등록금 지원 선발대상 중복
 - 경제력에 따라 ‘역량개발 기회’ 격차증가 → 진로역량 중심지원 전환요구
- 향후 개선방향
 - 저소득층 학생에게 안정적 학업수행 및 개인역량 개발 집중지원
 - 고교 무상교육·국가장학금 확대시기에 따라 재단의 지원을 역량개발로 전환
 - 필요역량(진로·나눔·글로벌)을 중심으로 서울특화 학업장려금 지원 추진
 - 재단사업 운영구조 통합
 - 단일 장학사업 모델 및 통합 장학사업성과 관리 추진
 - 멘토링 기반의 선순환 문화 확산
 - 장학금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활동주체로 전환 및 참여·나눔문화 확산

5) 2017.7.12., 주제 :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 모델’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03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 관련법령
 - 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11,571,543천원
(인건비 510,594, 운영경비 583,913, 사업비 10,438,359, 성과급 38,677)

나. 주요사업

- 공평한 교육의 기회제공·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지원 장학사업 :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지원
 -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및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 인재지원 및 교류 활성화 : 멘토링, 특강,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
 - 홍보사업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

다. 출연의 필요성

-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육정책과 교육정책팀 한동석(☎2133-3913)